



2025. 4. 1.

대한법의학회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서류제출 안내

1. 인정의 자격 요건

인정의 자격 신청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자격

- 1) 대한법의학회 회원으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자
- 2) 신청 시점 기준 3년 이상 정회원으로서의 활동 및 회비 완납
- 3) 신청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학회가 인정한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
- 4) 신청 시점 기준 3년 이내 평점 이수(아래에서 세부적인 구성 설명)

※ 3년 이상 정회원으로서의 활동 및 회비완납과 관련하여 이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경력을 학회 활동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병리학 전문의의 경우 전문의 교육기간동안 2년 법의학 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당한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합니다.

나. 평점

평점은 교육평점, 논문평점, 실무평점으로 구성합니다.

1) 교육평점

가. 인정의 자격을 위해서는 교육평점 30점을 필요로 한다.

나. 대한법의학회 정기학회 참석은 10점, 연수강좌 참석은 3점으로 환산한다. 연제발표의 경우에는 발표자와 책임저자에 대하여 3점을 가산한다. 연제라 함은 포스터, 구연, 교육프로그램 발표를 모두 포함한다. 가산 대상 범위는 이하 규정에서도 동일하다.

다.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법의학 및 병리학 유관학회의 정기학회 참석은 5점, 연수강

좌 참석은 2점으로 환산한다. 발표의 경우에는 2점을 가산한다.

라. 유관학회의 평점을 포함하는 경우 대한법의학회 평점이 2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논문평점

가. 신청 시점을 기준하여, 전문학술지에 최소 2회 이상 논문을 게재하여야만 한다. 이 경우 대한법의학회지 혹은 법의학 관련 외국학회지에 제1저자 및 교신저자로 반드시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나. 공저자의 경우 50%를 반영한다.

다. 논문의 전문성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3) 실무평점

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최소 100예 이상의 부검을 주도적으로 혹은 법의인정의 지도하에 시행하여야만 한다.

나. 현장 검안의 경우 부검의 1/2 평점을 인정한다. 검안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검안에 의한 결과는 총 실무평점의 2/3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치의학, 법의인류학 분야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가. 인정의 신청서 및 첨부된 양식에 따른 서류

법의학 관련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진 실무목록에 감정에 관여한 대한법의학회 인정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이외 기관에서 시행된 감정업무의 경우 실무목록과 함께 감정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실무목록 및 감정을 지도한 대한법의학회 인정의의 확인, 대한법의학회 회장 또는 학술이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나. 이력서 (재직확인서, 경력증명서 포함)

다. 의사면허증 (사본)

라. 수수료 입금 영수증 (학회에서 발행)

3. 서류 제출과 관련한 사항

가. (서식) 서류 서식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나. (서류제출) 서류는 아래 접수처에 제출 바랍니다. 우편 송부(등기) 또는 이메일(서류 PDF 변환)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연락처 아래 참조)

다. 접수처

1) 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320호 (우) 03722
학술이사 박종필

2) 이메일: parkjp@yuhs.ac (학술이사 이메일)

라. 접수기한: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마. 회비 납부 내역 확인을 위해서는 서류 제출 전 미리 학회 메일(kslm@legalmedicine.or.kr)로 신청 바랍니다. 신청자의 완납 여부는 메일로 신청하시면 확인하여 추후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바. (인정의 수수료 납부) 인정의 수수료 60만원은 다음에 안내하는 학회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좌안내: **신한은행 100-031-698119 (예금주: 대한법의학회)**

사.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정의 신청을 마감일까지 철회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아. 인정의 신청 철회는 마감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감일까지 철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가운데 관련 비용 10만원을 제외하고, 50만원만 반환됩니다.

자. 서류심사 후 필기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며, 필기시험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4. 기타 문의

학술이사: 박종필

email: parkjp@yuhs.ac

- 끝 -